

■ **쟁점**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 확대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귀금속·보석업, 자동차부품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운영업,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공동주택업 등 10개 업종이다.

**<표1> 고시 적용 대상 업종**

현행(10개)	개정(현행외 10개 업종 추가)
부동산중개업	의류업
학습교재업	가구업
학원운영업	주방용품업
증권투자업	귀금속·보석업
장의업	자동차부품업
체육시설운영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	건강식품업
사진현상·촬영업	산후조리원운영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완구업	공동주택업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체별 특성과 표시·광고 기법 등을 고려하여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당해 중요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광고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인쇄매체 광고를 통해 이미 중요정보를 광고한 경우 그 인쇄매체 광고를 참고하도록 하는 등 인쇄매체 광고사실을 인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포장·용기·라벨 상에 중요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와같이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표시·광고 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중요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신규 추가되는 10개 업종의 항목별 중요정보 공개 내용이다.

- 의류업 : ①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②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가구업 : ①주요 원재료의 종류 ②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주방용품업(식기·쌍크대·정수기) : ①품질보증기간 ②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귀금속·보석업 : ①세공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②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자동차부품업 : ①품질보증기간 ②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①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 건강식품업 : ①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산후조리원 운영업 : ①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부담비용) ②중도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 기준
-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업 : ①교사진 주요 약력 ②입학금·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비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이 있는 지 여부 및 추가비용 내역
- 공동주택업 : ①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의류의 혼용률과 세탁방법은 이미 라벨에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소비자 피해발생시의 보상규정이나 환불내용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표시가 돼있기 때문이다.

대한투자신탁 홍보팀 임상수 대리는 “광고라는 것이 말을 줄이고 초점만 살려 부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니 차리리 계약서를 뿌리거나 직접 창구에 나가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며 이미 사회적인 상식으로 일반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건설회사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광고회사 AD는 “그런 규제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될 것 아니냐.” 며 난감해 했다.

규제 위주의 광고심의를 하다보면 심의기법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심의를 위한 심의가 되고, 중국에는 광고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당업종의 실무자들에 대한 홍보 또한 시급한 현실이다.

<표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연도별 시정실적

연 도	'81~'92	'93	'94	'95	'96	'97	'98	'99	'00,1~9	계
고 발	10	-	1	5	1	2	4	1	-	24
시정명령 (과징금)	218	40	41	18	47	68	84	243	150	910
시정권고	(-)	(1)	(5)	(3)	(6)	(2)	(2)	(18)	(4)	(39)
경 고	21	1	18	15	24	52	2	-		133
계	247	59	82	59	58	440	96	97	90	897
계	496	100	142	97	130	232	186	341	240	1,964

주)1,964건 중에는 1999.7.1부터 시행된 표시·광고법에 의해 조치된 98건이 포함되어 있음

<표3> 업종별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실적

구 분	'96	'97	'98	'99	계('96~'99)	
					건수	비중
건설·부동산업	12	13	20	23	68	7.7
운수·통신업	2	15	13	25	55	6.2
금융·보험업	16	1	10	44	71	8.0
도·소매업	36	29	51	124	240	27.0
제조업	28	94	33	17	172	19.3
음식료업	10	21	9	9	49	5.5
기타 서비스업 등	26	59	50	99	234	26.3
계	130	232	186	341	889	100.0

주) 경고 이상 조치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